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 법률안 제309조의2(사이버 명예훼손)의 신설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률안 제311조의2(사이버 모욕)의 신설은 현재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제70조 제3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2008. 10.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37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안에 해당된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법률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형법」 제311조, 제312조

2. 참고기준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III. 판단

1.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신설(법률안 제309조의2)

법률안은 「형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규정을 두되,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의 특수성과 범행의 수단·방법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위와 같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일반법인 형법보다는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맞추어 신설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 보다 더 법률 규정 체계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형을 높일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중복되는 법률안 제309조의2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법률안 제311조의2 및 제312조제2항)

법률안은 제311조의2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법률안 제312조의제2항을 신설하여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과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으로 제출되어 있다.

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이버 모욕죄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복되는 법률안 제311조의2는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 및 국회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친고죄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첨부 결정문 참조)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첨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1부.

2009. 2. 5.

위원장 안 경 환

위원 최 경 숙

위원 유 남 영

위원 문 경 란

첨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친고죄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2008. 1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83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

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위 법률안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법률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형법」 제311조, 제312조

2. 참고기준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III. 판단

법률안 제70조 제3항 및 제4항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도입여부 및 소추요건을 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사이버 공간은 이용자 간의 힘의 우열이 없는 평등한 공간이자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법적규제가 문제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확인사건(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에서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는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 촉진적 매체'이며,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는 등의 특성이 인정되므로,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에 큰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 강화가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사이버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유일하며, 이외 별도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점,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나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이 가입한 국제언론인협회(IPI)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여 「형법」상 모욕죄마저도 매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이버모욕죄의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를 일반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신고 또는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가해자를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가해자 특정의 곤

란성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야 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가 친고죄로 규정된 것은 그 보호법익이 개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동일한 보호법익을 갖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일관적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결국 피해자의 명예감정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심각한 형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삼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종국적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률안과 같이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반의사불벌죄의 형태가 아닌 친고죄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형벌 이론에 부합함은 물론,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2009. 2. 5.

위원장 안경환

위원 최경숙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위 정본입니다.

2009. 2. 2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이 경 우 (인)